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1.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 이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한 용어로 분명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제5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교육¹⁾”이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

1)「고시」 “제2조(정의)” 4항에서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삶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고시”의 ‘학생생활지도’를 ‘학생생활교육’의 용어로 안내함

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6조(교육 3주체의 책무 등)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3.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 나.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 다.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 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 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교육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 바. 흡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4. 학교의 장(“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및 법인”등을 포함)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교원의 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시설을 구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 활동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8. 교원은 상담을 위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9.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제8조(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1. 학생의 생활교육과 더불어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복지부장, 각 학과장, 생활교육 담당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3. 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안전복지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4.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기구로서 생활안전복지부교사로 구성된 「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소위원회는 생활안전복지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학생의 포상 및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전복지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2. 소위원회는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생활안전복지부장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3.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포상 및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4.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 21003호)」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0조(의결 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포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 2회 이내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 공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시교육청 주최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귀감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매체에 보도된 학생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공학 분야의 기술 습득 능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각종 전공분야의 대회에 참가하여 성취를 높였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수 취득한 학생에게 「기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3. 나눔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 사람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한 학생에게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4. 교내 담당구역 청소 및 분리수거를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 「솔선수범상」을 수여할 수 있다.
5.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다수의 선행을 통해 상점을 부여 받거나 학생자치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바른학생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생활평점제도)

1. 학생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격을 존중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의 의무와 함께 교사의 책무를 민주적으로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특정 학생에게 상·벌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3. 상·벌점은 월1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4. 상·벌점의 통계는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전년도 상·벌점은 해당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4. 학교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징계 원칙)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바르게 나아질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

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6.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미혼모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소)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 피해 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징계의 심의)

1. 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교내봉사」 이하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심의·의결 후 「교내봉사」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교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내의 봉사’는 1회 최대 2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는 1일 최대 6시간 이내, 조치별 30시간 이내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특별교육 이수²⁾’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거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나 지정 위탁 기관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이수 시간 및 기간은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4. ‘출석정지³⁾’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⁴⁾’은 학교의 장이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진술권 보장)

1.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단,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3.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유, 의견 진술 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18조(심의 확정, 징계통보 및 재심 요구)

1.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포상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3.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④항]

3) ‘출석정지’란 대상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등교정지’와는 구분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퇴학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며,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 최소 3회 이상의 단계적 징계 이후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퇴학처분 조치를 부과하도록 한다.

5.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6.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나. 피청구인
 - 다.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라. 재심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재심은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재적 위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평가 응시 및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평가(고사 및 수행평가 포함)에 응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어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평가(고사 및 수행평가 포함) 및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0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1.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1.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바르게 나아질 성향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사후 조치)

1.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 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23조(징계의 기준)

1.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2.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3. 학생생활평점제도를 운영할 경우 벌점은 교육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해당 행위가 징계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통해서만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학교생활교육

제24조(생활교육의 범위 및 방식)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제25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2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27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1.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휴식시간)

1.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3.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제 35조에 따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을 특정 장소로 분리할 때에는 학생의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9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1. 학생은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2.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3.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0조(물품 소지·사용 금지 및 분리 보관 등)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지·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수업 중 휴대전화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장난감,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허가받지 않은 녹음기, 이어폰, 전자기기,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흉기, 칼,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 3)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 4)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 5)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1)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일체
- 2)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라. 그 밖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2)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3)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4) 개인 이동 수단(PM),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교내 운행 차량
- 5)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

3.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분리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호	수업 중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 및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수업 시간	교탁 위 등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 수업 종료 후: 학생에게 되돌려줌
2 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일	학교별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원은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해당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서식 23]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알림([서식23] 활용) •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3 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호	그 밖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생활교육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

4. 물품 분리 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 불응 시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5. 교원은 제3항에 따라 분리 및 보관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소지 물품 조사)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⁶⁾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⁷⁾
2. 물품 조사 시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 물품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2조(보건 및 안전)

1. 학생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4.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 포함)에 참여할 때 지도 교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5.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33조(인성 및 대인관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5)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6) 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목격 및 구체적인 소지 신고가 있거나 절도 등이 명확히 식별되었을 경우, 자해 또는 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약물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7) 또한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을 포함한다)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및 태도 등을 지도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교육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 인계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학습권 보호)

1.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임신·출산·이성교제를 이유로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서는 안 된다.

제35조(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2.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생활교육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방법	학습지원
1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중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⁸⁾	교실 내 다른 좌석 등 수업 교원 지정 장소 (수업 시간 내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주의를 준 후 실시 •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을 분리할 수 있음 •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일 때 복귀를 지시할 수 있음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지속해서 방해하여, 교육활동 진행이 심각하게 어려울 경우 ⁹⁾	사물함 앞, 교실 뒤편, 운동장 스탠드, 강당 뒤편 등 (수업 시간 내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일 때 복귀를 지시할 수 있음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생활교육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방법	학습지원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에게 수업 방해 금지, 자리 이동 금지 등 주의를 준 후 실시 자기 책상과 의자를 복도로 옮겨 성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수업 참여,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교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이 학생보호인력에게 학생 인계 요청 해당 학생은 학생보호인력과 함께 학교별 지정 장소로 이동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점심시간 활용 시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별 지정 장소 (60분 이내)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남겨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	

- ※ 학교별 지정 장소는 교장(감)실, 교무실, 성찰교실, 학교 내 유휴교실 등 사안의 경중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지정
- ※ 학생보호인력은 교직원, 학습지원팀, 교육활동보조인력, 배움터 지킴이 등 학교 여건과 교직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 학교별 지정 장소에서의 분리 학생 지도 방법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 지각의 기준은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 성찰 과제는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학습 용어 정리 등 지도교원이 상황에 맞게 제시
- ※ 관련 학생의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별 생활교육 절차에 따라 진행
- ※ 학생 분리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생활교육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

-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시 분리 요청 교원은 필요 시 분리 학생에게 ‘성찰 과제 부여’ 또는 ‘학생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 분리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¹⁰⁾
- 교원은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제1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생활교육 불응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3장 (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0) [서식 25] 학생 분리 지도 대장 활용

제37조(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8조(정보통신 윤리)

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2.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3.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5. 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학생 간 대화 등) 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9조(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 소지·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 가. 고사 기간 동안 소지 제한
 - 나. 수업 시간 중 사용 제한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소지·사용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아동학대 금지)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75조]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3조]

4. 아동 관련기관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75조]

제41조(미혼모 학습권 보호)

1.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학생 미혼모는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으로 정의된다.
3. 임신, 출산 및 이성교제를 이유로 퇴학, 전학 등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42조(안전)

1.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2. 학교는 학년 초에 학교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43조(학업 중단 예방)

학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교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라,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한다.

제4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4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1.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복지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심의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안전복지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4.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심의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심의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7. 학교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45조(개정안의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재직 교원 과반수의 동의
 - 나. 학생 또는 학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
 - 다. 학부모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
 - 라.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7조(심의 및 결정)

1. 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8조(교육 및 연수)

학교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9조(적용 및 환류)

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학생 포상 세부기준

구분	세부내용
공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자 중 10명 이내로 선발 - 시교육청 주최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3위 이내) - 타인의 귀감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매체에 보도된 학생 - 당해 년도 실적으로 추천 및 시상 (전년도 수상자 금년도 공로로 재 추천 가능)
봉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자 중 학년별 3명 이내로 선발 - 해당 학년 봉사시간 최소 30시간 활동한 학생 - 해당 학년 봉사시간 및 내용 우수 학생 상위 3명 - 당해 년도 실적으로 추천 및 시상 (전년도 수상자 금년도 봉사시간으로 재 추천 가능)
바른학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일 기준으로 상점이 많은 학생 학년별 5명 이내 선발 (상점에서 별점 감산) - 학생자치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학생자치회 6명, 수재학사자치위원회 3명 이내) - 당해 년도 실적으로 추천 및 시상 (전년도 수상자 금년도 상점 및 자치회 활동으로 재 추천 가능)
기술상 (장학금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자 중 ○○명 이내로 선발 - 국가 기술 자격증을 5개 이상 취득한 학생(사실 자격증 제외) - 재학 중 1회 수상
솔선수범상 (장학금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급 분리수거 담당 중 학년별 2학급 학급당 2명 선발 - 각 학급 담당구역 청소 담당 중 1학년, 2학년 5학급 학급당 2명 선발 - 솔선수범의 자세로 타에 모범이 된 학생으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급당 2명 선발

학생 징계 세부기준

구분	세부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별점	누적 별점 20점 이상	●				
	누적 별점 40점 이상	●	●			
	누적 별점 60점 이상	●	●	●		
	누적 별점 80점 이상	●	●	●	●	
약물	음주 및 흡연(소지 포함)	●	●	●	●	
	환각제 및 향정신성 약물 복용(소지 포함)	●	●	●	●	●
폭력	타인의 명예 훼손	●	●	●	●	●
	학교폭력(언어폭력/신체폭력/성폭력 등)	●	●	●	●	●
	교사에 대한 위협 및 폭력	●	●	●	●	●
준법	공공시설의 고의적 파손	●	●	●	●	●
	절도, 사기 및 금품갈취	●	●	●	●	●
	공문서 위조(신분증/생활기록부 등)	●	●	●	●	●
	고사 부정행위	●	●	●	●	●
특별 사안	학교장의 허가 없이 집회 개최	●	●	●	●	●
	반사회적 문서 및 동영상 유포	●	●	●	●	●
	학생 징계에 대한 불응 및 도피	●	●	●	●	●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	●	●
	학생 징계 수행 중 개선의 의지가 부족한 경우	●	●	●	●	●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생생활평점 제도

구분	세부내용	점수	
상점	선행	헌혈 1회(헌혈 후 1개월 이내 확인)	3점
		교내 환경 정화 활동(1시간)	3점
		몸이 불편한 학생 도우미 활동	3점
		학교 행사 도우미 활동	3점
		분실물 신고 및 선행 제보	3점
	모범	각종 대회 참가	3점
		교외 수상(공로상과 중복 금지)	5점
		학교 내 불안전 요소, 고장 및 파손 제보	5점
		학급별 모범학생(학기당 1명 담임교사 추천)	10점
		교과별 모범학생(학기당 1명 담당교사 추천)	10점
	기타	학생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모든 활동	1~10점
		캠페인 활동 참여 (30분씩 5일간)	3점
별점	용의	두발규정 위반(염색/탈색/파마 등)	3점
		화장 및 장신구 착용(색조화장/매니큐어/서클렌즈 등)	3점
	복장	교복 미착용(명찰 미부착 포함)	3점
		교복 무단 변형	3점
	질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및 쓰레기 투기	3점
		금전을 포함한 오락(도박) 및 기초질서 위반(줄서기 등)	5점
		교실 및 특별구역 청소 상태 불량(분리수거 포함)	5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성적 수치심 유발 물품 및 인화물질 등)	5점
		이성간 과도한 신체 접촉	10점
	예절	욕설(비속어) 사용(온·오프라인) 및 타인의 물건 무단 사용	3점
		지속적 교육활동 방해 및 거짓말	5점
		교사 지시 불이행 및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	1~10점
	휴대전화	교육활동 중 허가 없이 휴대전화 사용	1~5점
	기타	학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모든 활동	1~10점

학생 용의복장 규정

구분	세부내용	
교복 착용 기준	동복	자켓, 조끼, 셔츠(블라우스), 넥타이(리본), 동복하의를 착용한다.
	춘추복	조끼, 셔츠(블라우스), 넥타이(리본), 동복하의를 착용한다.
	하복	하복상의, 하복하의를 착용한다.
	생활복	별도의 정해진 기간에만 착용한다.
	가디건	날씨의 변화에 따라 명찰이 부착된 가디건을 착용할 수 있다.
	외투	춘추복(하복) 착용 후 자켓을 입지 않고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두발	공통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두발 상태를 유지한다.
		염색, 탈색, 파마 등을 금지한다.
		무스, 왁스, 젤 등의 헤어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머리에 상처나 흉터가 심한 경우 소위원회의 확인 후 허용한다.
복장	공통	상의는 단추를 채운 상태에서 앞여밈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고, 양팔을 벌린 상태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상의 길이는 아랫단이 하의 허릿단 아래로 10cm 이상 내려오도록 한다.
		상의 안에 티셔츠를 입는 경우 끝단이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고 티셔츠 내부의 무늬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하의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하의 길이는 아랫단이 복사뼈 중간 아래로 내려오도록 한다.
		생활복 하의는 아랫단이 무릎의 중간 아래로 내려오도록 한다.
		명찰은 좌측 주머니 상단에 맞추어 탈부착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여학생	치마의 길이는 아랫단이 무릎의 중간 아래로 내려오도록 한다.	
신발	공통	화려하지 않은 운동화 또는 학생용 단화를 착용한다.
		슬리퍼는 지정된 장소(교실/허용된 실습실 등)에서만 착용한다.
기타	색조화장, 매니큐어 및 악세사리 착용을 금지한다.	
	담요는 지정된 장소(교실/실습실 등)에서 무릎 덮개로만 사용한다.	